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7.27.(수) 11:00	배포 일시	2022. 7. 27.(수)		
담당 부서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	책임자	팀장	김도균	044-202-1720
		담당자	사무관	정은정	044-202-1714
담당 부서 <사회적 거리두기>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	책임자	팀 장	곽 진	043-719-7140
		담당자	사무관	윤성희	043-719-9062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발표 –

◈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발표**

-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비대면 회의·행사 활성화, 재택근무·휴가 적극 실시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가족돌봄비용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등 **안내·홍보 강화**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강화, 입소자 대면 면회 제한 등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강화(7.25~), 의료기동 전담반 등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지원 조치**
- **(교육부)** 방학 중 **학원·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감염 예방 지도 강화, 학원 방역 점검**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스포츠경기 마스크 착용 의무 중점 홍보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현장방역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계와 협의를 통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업계 자율적 관리방안 마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로부터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 질병 특성,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 **(치명률)** : 해외유입 및 대구·경북·수도권 유행기('20.1~8월) 2.1%
→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22.1~4월) 0.10% → **'22.6월 0.06%(잠정)**
▸ **(BA.5 전파력)** : BA.2대비 BA.4 19.1%, **BA.5 35.1%**(영국 보건안전청, 6.24.)
▸ **(치료제)** : '22.1.13일 2.1만명분 첫 도입 → '22.7월까지 **106.2만명분 확보, 94.2만 추가 구매 협의중**('22.下 34.2만, '23.上 60만)
(예방접종) 7월 3주 60세 이상 3차 접종률 **89.9%**, 60세 이상 4차 접종률 34.4%
(병상가동률) 7월 3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 **18.9%**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22.1월 55개소 → **'22.7월 1.3만개소**

□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

❶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❷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❸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❹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❺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❻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 공공 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하며,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실내 환기**를 통해 **공기 중 비말로 인한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 등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내부를 환기하도록 권고한다.

-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고,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행하며,

- **기계환기설비 미도입 시설**의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하고, **밀폐된 곳**은 **선풍기 등을 활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아울러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 또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에 대한 밀집도 완화, 유증상 관리 강화, 자율 방역관리 등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 실천 분위기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 및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혁신처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시행 】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7.27.~8월말) 동안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 또한,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하여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다.

○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 임상증상 유무 확인,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강조된다.

- 특히, 여름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안내 방안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 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병가 또는 약정 유·무급 휴가 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병가 또는 유·무급 휴가 등 부여 권장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으며

* (대상) '22.1.1 이후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기업규모 무관)

** 22.12.16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복지서비스 검색부터 신청까지 복지로

【 보건복지부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 종사자 선제검사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 (現)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 (변경)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기동전담반 운영현황 : 150개 기관에서 196개 팀 운영, 1,810명 대상 대면진료(7.11 기준)

□ 또한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 방학 중 학교 및 학원 방역 관리방안 】

□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받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교육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하였다.

- 또한,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여 외부 집단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의 현장 수용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원단체가 협력하여 방역점검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분야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방안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영화관·노래연습장·PC방·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시, 손위생 관리 환경 조성,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취식 시간 외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착용 안내 등

○ 특히,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동시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6.21.~8.31.)에 대해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증가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 점검시설: 총 852개소(공공 200개소, 민간 400개소, 보수보강 242개소, 긴급 10개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또한, 체육시설 알리미 등 SNS 활용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상시 안내하고, 영화상영관 현장 **방역관리 인력 지원**(302억원, 2,800명), 호텔·콘도 업계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 속 일상 방역이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환기**하고 **▲시음·시식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시음·시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유통업계 자율적 방역관리 방안>

- 방문객 방역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인원 배치, ▲기존 방역장비 재운영, ▲방역 안내 방송(시간당 3회), ▲**식품관 등 취약지역 소독·환기** 및 매일 자체점검, ▲**시음·시식 운영 자제**, ▲비대면 주문·계산 확대, ▲휴게시설 한칸 띄우기, ▲승강기 탑승인원 감축 등
- 종사자 방역관리	▲**일일 유증상자 확인**, ▲**아프면 쉬기 환경 조성**, ▲식사시간 조정, ▲종사자 간 거리유지 및 휴게시 취식 자제, ▲통근버스 띄워 앉기, ▲재택근무·시차출근 적용 등
- 안전한 취식관리	※ 시음·시식 운영은 자제하되, 운영시 아래 수칙을 철저히 준수 ▲취식 특별관리구역 지정·관리(소독·환기·점검 강화) ▲취식 주의사항 게시 및 안내(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하기, 이동하며 취식하지 않기, 취식 후 마스크 즉시 착용하기) ▲시식 코너 간 3m 이상 거리두기, ▲취식 안내방송(시간당 1회 이상)

○ 또한 산업부는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방역상황 변동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 방역의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 고 재차 강조하며,

○ 학교와 사업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리두기 실천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7월 26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30병상이 증가한 6,077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1.3%**, 준-중증병상 **42.4%**, 중등증병상 **33.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8%**이다.

< 7.26.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準-重症) 준-중환자병상			중등증(中等症)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무증상·경증(輕症)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1,556 (+80)**	**332 (21.3)**	**1,224 (+70)**	**2,320 (+50)**	**984 (42.4)**	**1,336 (-18)**	**2,085 (+0)**	**691 (33.1)**	**1,394 (-11)**	**116 (+0)**	**9 (7.8)**	**107 (-1)**
수도권	**1,147 (+56)**	**234 (20.4)**	**913 (+58)**	**1,683 (+34)**	**713 (42.4)**	**970 (-22)**	**1,108 (+0)**	**376 (33.9)**	**732 (-24)**	**116 (+0)**	**9 (7.8)**	**107 (-1)**
중수본	-	-	-	-	-	-	-	-	-	116	9	107
서울	191	48	143	254	139	115	268	99	169	0	0	0
경기	610	131	479	886	396	490	431	162	269	0	0	0
인천	346	55	291	543	178	365	409	115	294	0	0	0
비수도권	**409 (+24)**	**98 (24.0)**	**311 (+12)**	**637 (+16)**	**271 (42.5)**	**366 (+4)**	**977 (+0)**	**315 (32.2)**	**662 (+13)**	**0 (+0)**	**0 (0)**	**0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36	11	25	12	6	6	40	29	11	0	0	0
충청권	84	28	56	93	55	38	421	103	318	0	0	0
호남권	110	22	88	183	89	94	220	98	122	0	0	0
경북권	66	9	57	134	51	83	97	35	62	0	0	0
경남권	91	26	65	181	66	115	157	40	117	0	0	0
제주	22	2	20	34	4	30	42	10	32	0	0	0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7월 27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77명**(전일 대비 9명 증가)이다.

○ **신규 사망자**는 **25명**이고, **60세 이상이 23명**(92.0%)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7,096명이고, **확진자(100,28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7.0%이며**, 최근 1주간 **13.9%~17.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5.22.~7.16.)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8%, 위중증 환자의 33.9%, 사망자의 41.1%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분석대상] '22.5.22~'22.7.16. 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단위:명(%)

주차	확진						위중증						사망					
	전체	미접종	1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완료	3차 접종 완료	4차 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완료	3차 접종 완료	4차 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완료	3차 접종 완료	4차 접종 완료
전체	678,033	40,696	5,486	170,057	430,533	31,261	390	124	8	37	157	64	311	118	10	28	105	50
	(100%)	(6.0%)	(0.8%)	(25.1%)	(63.5%)	(4.6%)	(100.0%)	(31.8%)	(2.1%)	(9.5%)	(40.3%)	(16.4%)	(100.0%)	(37.9%)	(3.2%)	(9.0%)	(33.8%)	(16.1%)
5월 4주	106,009	5,898	898	26,367	68,458	4,388	111	33	3	9	50	16	92	34	5	12	28	13
	(100%)	(5.6%)	(0.9%)	(24.9%)	(64.6%)	(4.1%)	(100.0%)	(29.7%)	(2.7%)	(8.1%)	(45.1%)	(14.4%)	(100.0%)	(37.0%)	(5.4%)	(13.0%)	(30.4%)	(14.1%)
6월 1주	72,022	4,160	611	18,454	45,928	2,869	62	23	0	4	26	9	64	26	1	4	25	8
	(100%)	(5.8%)	(0.9%)	(25.6%)	(63.8%)	(4.0%)	(100.0%)	(37.1%)	(0.0%)	(6.5%)	(41.9%)	(14.5%)	(100.0%)	(40.6%)	(1.6%)	(6.3%)	(39.1%)	(12.5%)
6월 2주	52,988	3,306	412	13,023	33,864	2,383	51	19	2	5	23	2	28	10	0	4	11	3
	(100%)	(6.2%)	(0.8%)	(24.6%)	(63.9%)	(4.5%)	(100.0%)	(37.3%)	(3.9%)	(9.8%)	(45.1%)	(3.9%)	(100.0%)	(35.7%)	(0.0%)	(14.3%)	(39.3%)	(10.7%)
6월 3주	43,306	2,929	336	10,227	27,739	2,075	29	12	0	4	8	5	35	14	1	2	15	3
	(100%)	(6.8%)	(0.8%)	(23.6%)	(64.1%)	(4.8%)	(100.0%)	(41.4%)	(0.0%)	(13.8%)	(27.6%)	(17.2%)	(100.0%)	(40.0%)	(2.9%)	(5.7%)	(42.9%)	(8.6%)
6월 4주	41,792	3,023	359	9,489	26,845	2,076	36	10	1	5	12	8	16	6	2	0	4	4
	(100%)	(7.2%)	(0.9%)	(22.7%)	(64.2%)	(5.0%)	(100.0%)	(27.8%)	(2.8%)	(13.9%)	(33.3%)	(22.2%)	(100.0%)	(37.5%)	(12.5%)	(0.0%)	(25.0%)	(25.0%)
6월 5주	53,831	3,542	390	12,796	34,710	2,393	26	8	1	3	11	3	25	8	0	2	8	7
	(100%)	(6.6%)	(0.7%)	(23.8%)	(64.5%)	(4.5%)	(100.0%)	(30.8%)	(3.9%)	(11.5%)	(42.3%)	(11.5%)	(100.0%)	(32.0%)	(0.0%)	(8.0%)	(32.0%)	(28.0%)
7월 1주	102,074	6,153	780	25,597	64,699	4,845	46	10	1	5	16	14	28	12	0	2	6	8
	(100%)	(6.0%)	(0.8%)	(25.1%)	(63.4%)	(4.8%)	(100.0%)	(21.7%)	(2.2%)	(10.9%)	(34.8%)	(30.4%)	(100.0%)	(42.9%)	(0.0%)	(7.1%)	(21.4%)	(28.6%)
7월 2주	206,011	11,685	1,700	54,104	128,290	10,232	29	9	0	2	11	7	23	8	1	2	8	4
	(100%)	(5.7%)	(0.8%)	(26.3%)	(62.3%)	(5.0%)	(100.0%)	(31.0%)	(0.0%)	(6.9%)	(37.9%)	(24.1%)	(100.0%)	(34.8%)	(4.4%)	(8.7%)	(34.8%)	(17.4%)

1」(미접종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 관찰 기간인 28일 이내 ▭('22년 5월 2주~6월 1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가능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7,969명**으로, 수도권 **51,402명**, 비수도권 **46,567명**이다. 현재 **405,53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7.27.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0개소**(7.27. 0시 기준)로 **17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2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595개소**가 있다. (7.26.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 (7.27. 0시 기준)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O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해제 14주차**(7.18.~7.24.) **전국 이동량**은 **2억 5,380만 건**으로, **전 주**(7.11.~7.17.) **이동량**(2억 4,545만 건) 대비 **3.4%**(835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263만 건**으로 **전 주**(7.11.~7.17.) **1억 2,929만 건** 대비 **2.6%**(334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117만건**으로 **전 주**(7.11.~7.17.) **1억 1,616만 건** 대비 **4.3%**(501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7.18.~7.24.) **전국 이동량**은 **2억 5,985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2.3%**(605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구분		1주차 (11.1.~11.7.)	…	9주차 (6.13.~6.19.)	10주차 (6.20.~6.26.)	11주차 (6.27.~7.3.)	12주차 (7.4.~7.10.)	13주차 (7.11~7.17)	14주차 (7.18~7.24)
거리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단계적 일상회복 (11.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주간이동량	전국	25,141	-	25,598	25,576	25,157	25,454	24,545	25,380
	전국 직전 주 대비 증감		-	1.1%	▲0.1%	▲1.6%	1.2%	▲3.6%	3.4%
	수도권	13,137	-	13,530	13,536	13,229	13,500	12,929	13,263
	수도권 직전 주 대비 증감		-	2.5%	0.04%	▲2.3%	2.0%	▲4.2%	2.6%
	비수도권	12,004	-	12,068	12,040	11,928	11,954	11,616	12,117
	비수도권 직전 주 대비 증감		-	▲0.4%	▲0.2%	▲0.9%	0.2%	▲2.8%	4.3%

<붙임> 1.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요약)
2. 방역 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주요 내용
3. 연령별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기준
4. 감염병 보도준칙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담당 부서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	책임자	팀장	김도균	044-202-1720
		담당자	사무관	정은정	044-202-1714
담당 부서 <사회적 거리두기>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	책임자	팀 장	곽 진	043-719-7140
		담당자	사무관	윤성희	043-719-9062
담당 부서	인사혁신처 복무과	책임자	과 장	장선정	044-201-8440
		담당자	사무관	김창희	044-201-8444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8870
		담당자	사무관	황규석	044-202-8871
담당 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시설대응팀	책임자	팀 장	이선주	044-202-3510
		담당자	사무관	이유영	044-202-1903
담당 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7
담당 부서	교육부 학원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현미	044-203-6218
		담당자	사무관	오인택	044-203-638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성희	044-203-2211
		담당자	사무관	정슬기	044-203-2212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김애경	044-203-4384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 1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요약)

부처별	분야	방역지침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방역관리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건강관리 철저 - 실내 마스크착용, 환기, 손씻기 등 - 임상증상여부 확인,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비대면 회의.행사 등 활성화 - 비대면 회의.보고, 불요불급 행사.출장.모임.회식 등 축소.자제 ○실내 밀집도 완화 - 출퇴근.점심시간 시차 운영 - 재택근무, 연가 등 적극 활용
고용노동부	유증상 근로자 관리	○유증상 근로자 휴가 부여 - 입원.격리근로자 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재택근무 문화 활성화 - 재택근무 지원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건복지부	감염취약시설 관리	○외부 감염요인 차단 - 종사자 선제검사, 방역수칙 강화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지원 - 원내 치료지원, 병상 우선 배정,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교육부	학생 방역관리	○방학 중 방역관리 - 생활지도 강화, 방역인력.물품 확보 및 지원 ○학원 방역관리 - 원격교습 전환 유도, 단체활동 자제 권고, 민관협력체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시설 방역관리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실외 시설 방역 관리 - 실내.외 체육시설, 영화.공연.경기장, 노래방.PC방 등
산업통상자원부	대형유통.물류시설 방역관리	○ 업계와 협의, 자율적 방역 관리방안 마련, 이행 당부 - 식품관 등 취약지역 소독·환기, 시음·시식 운영 자제, 시음·시식 운영시에는 안전한 취식관리 노력 등 ○ 업계·지자체·정부 현장점검 강화 및 업계와 협업체계 유지

붙임 2 방역 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주요 내용

□ 방역 수칙 준수

○ **(마스크)**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 전·후에도 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

*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음식물 섭취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대화 자제, 고위험군 및 3밀시설 방문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권고**

○ **(환기·소독)** **가능한 자주 환기**하고 **기계환기설비 상시 가동** 권고, 일상적 공간 **주기적 청소** 및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

* 최소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환기(창문과 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맞통풍 활용)

○ **(개인위생)** **손 씻기** 및 **손위생 관리 환경** 조성, **기침 예절** 등

○ **(예방접종)** 정부 권고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권장**

○ **(유증상자)** **신속히 진료**받고, **출근·등교,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자제**,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 특히 **고위험군과의 접촉 최소화**

□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 **(사적모임)**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을 가능한 최소화**

- **실내 모임시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도록 권고, 특히 3밀환경 모임 최소화**

○ **(직장)** **밀집도 완화** 및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택근무, 식사 시간 분리 운영 및 비대면 회의 활성화, 불가피한 대면 회의시 규모·시간 최소화,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 등**

○ **(시설)**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 및 **다른 일행과 거리두기 유지** 등 **안내**

- **사전 예약제, 테이블간 간격 유지, 인원 분산 유도 및 공동 시설 (화장실·흡연실 등) 이용시 대화 자제 등**

붙임 3 연령별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기준

연령		기초접종		추가접종	
		1차	2차	3차	4차
5-11세	일반	희망접종(1~2차)		비대상	
	고위험군	권고접종(1~2차)			
12-17세	일반	권고접종(1~2차)		희망접종(3차)	비대상
	고위험군	권고접종(1~3차)			
18-49세	일반	권고접종(1~3차)			비대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권고접종(1~4차)			
50세 이상		권고접종(1~4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